

## 가금티푸스 근절 위해, 살처분 보상제도 도입하라

최 성 갑 도원농장 대표



**현** 재의 축산물 소비의 형태는 안전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또한 안전닭고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이미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지적되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질 것으로 본다. 안전한 닭고기의 생산에서 선결 되어야 하는 것이 병아리의 품질이라고 하여도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아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계·부화장의 방역 관리요령이 새로이 고시 되었다.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나, 이번에 발표된 종계·부화장의 방역관리요령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

### 1.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현 방역관리 요령은 살모넬라의 예방을 위한 지표로 밖에 볼 수 없다. 방역요령의 모든 법령이 살모넬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살모넬라에 감염된 닭으로부터 나오는 초생추는 높은 폐사를 동반하는 것으로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살모넬라의 전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농장에서 살모넬라의 발병 시점은 산란초기부터 피크로 가는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한 환우를 하는 계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특집 |

정기검사 후 1년 이내에 추가 검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종계의 분양을 추적하여 검사하여야 좀더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백세미를 제외한 방역 관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 방역 관리 요령을 보면 백세미를 제외한 바이는 병아리의 안정성 및 질병전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요령 제2조 3항에 보면 부화장이라 함은 씨알 또는 육용씨 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알”이라한다)을 부화하여 판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고명시된바 정부는 방역관리도 안된 산란용 암탉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관리도 되어지지 않아도 백세미용알은 부화과정에서 모든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백세미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임에도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용 암탉의 방역관리요령이 제고되지 않은 방역관리는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티푸스의 백신하고 있는 산란용 암탉의 현 상황으로 보아 정부의 살모넬라 방역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 보아지므로 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세미 생산 농가의 사육현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질병의 전파를 묵과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농장에서 가금가금티푸스 예방접종실시를 금지할 수 있기 전까지는 백세미 생산 산란계에 대하여 “종계장

부화장방역관리 요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질병을 차단하고자하는 의지가 농림부에서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현 시장에서 항생제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한 바 백세미에서의 항생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육계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농림부는 감수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백세미용 알과 병아리의 거래기록 작성 을 의무화 하여 살모넬라의 발생시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현재 농가의 사정은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는지?

계약에 의한 사육으로 가금티푸스 발생시 적당히 보상하고 다시 입추하여주는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농림부는 모르는지?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질병의 전파를 호미로 막을 것을 아래로 막아야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 | 특집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 3. 농림부는 방역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방역 문제에 접근하라

백세미의 소비는 계절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근래의 질병 발생동향을 보면 백세미의 생산이 많은 시기에 많은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금티푸스 백신을 한 후 병아리를 생산함으로서 야외에서 감염 되어도 병아리의 가금티푸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사육농가가 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종계장 방역 관리 수준으로 백세미 생산 산란계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금티푸스백신을 금지하였는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가금티푸스 백신을 하는 일부농가는 1차 백신을 6주 정도에 하고 추백리 검사를 하면 전혀 감지되지 않으므로 120일령에 추백리검사를 받고 그후 2차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밝혀질 수가 없다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하여야 관리요령 제4조의 1항의 백신접종금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요령 제4조 2항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를 한다면 이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방역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살모넬라예방에 접근함으로서 좀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가금티푸스 백신 금지에 대한 홍보

또한 농림부와 관계 단체에서는 종계에서의 가금티푸스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많은 종계농가나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농장에서는 백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금티푸스 백신을 한 계군이나, 안한 계군이나 야외에서 감염시 모계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초생추는 가금티푸스에 감염되어진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올바른 방역 관리의 체제로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생산농가 및 관련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방역요령이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결국 방역요령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육계산업을 이끌어 가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이제 좀더 멀리 보아 수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자, 계열업체, 농림부 등이 합심, 노력하여 추백리, 가금티푸스가 없는 좋은 병아리의 생산에 좀 더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육계산업 발전에 기여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란계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종계는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을 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세미를 생산하는 어미닭(산란계 암탉)에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을 방지함으로써 종계의 가금티푸스 발생의 피해가 큰 만큼 방역차원에서 종계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하여 정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